

순천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 규정

제정 2014. 07. 0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원 자격검정실시와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직과정 개설 및 폐지
2. 교직과정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·편성 및 운영
3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실시에 관한 사항
4. 기타 교직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, 교무부처장, 교무과장, 학사지원과장, 총장이 임명하는 교원 4명 및 총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1명 등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교무부처장이 된다.
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 및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회의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간사) 위원회의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학사지원과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고,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7조(기타 사항)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순천대학교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(2014. 07. 03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